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인천공항 검역전용 X-ray 검색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(7급 8명, 8급 8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명칭을 식생활소비진흥과로 변경하고,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소속 課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3명(7급 3명)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1일에서 2023년 7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6항 중 “식품산업정책과·식품산업진흥과·외식산업진흥과·수출진흥과·유통정책과·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·원예산업과·원예경영과·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·농산업정책과·과학기술정책과·친환경농업과·종자생명산업과·동물복지정책과”를 “식품산업정책과·식품산업진흥과·외식산업진흥과·수출진흥과·유통정책과·식생활소비진흥과·원예산업과·원예경영과·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·농산업정책과·과학기술정책과·친환경농업과·종자생명산업과·동물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5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”을 “식생활소비진흥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0호 중 “소비자·산지”를 “소비지·산지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의 운영

24.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

25.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

26.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

27. 제24호에 따른 인증제도, 제25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도 및 제26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

28.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

제15조제5항제6호 중 “위험분석”을 “위험분석(소독분야는 제외한다.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

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1,133”을 각각 “1,149”로 하고,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“15”를 “23”으로 하며,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“19”를 “27”로 한다.

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1,133”을 각각 “1,149”로 하고,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“15”를 “23”으로 하며,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“18”을 “26”으로 한다.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“제12조제11항제1호”를 “제12조제15항제1호”로, “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이 분장하고, 제12조제11항제3호”를 “식생활소비진흥과장이 분장하고, 제12조제15항제3호”로 한다.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1년 7월 11일”을 “2023년 7월 11일”로,

“2021년 7월 12일”을 “2023년 7월 12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촌정책국) ① ~ ④ (생략)	제8조(농촌정책국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.
1. ~ 14. (생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· 16. 삭제	15. · 1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7.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식품산업정책실) ① ~ ⑤ (생략)	제12조(식품산업정책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식품산업정책실에 식품산업정책과 · 식품산업진흥과 · 외식산업진흥과 · 수출진흥과 · 유통정책과 ·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· 원예산업과 · 원예경영과 ·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· 농산업정책과 · 과학기술정책과 · 친환경농업과 · 종자생명산업과 · 동물복지정책과</u> 및 농기자재정책팀을 두되,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, 동물복지정책	⑥ ----- <u>식품산업정책과 · 식품산업진흥과 · 외식산업진흥과 · 수출진흥과 · 유통정책과 · 식생활소비진흥과 · 원예산업과 · 원예경영과 ·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· 농산업정책과 · 과학기술정책과 · 친환경농업과 · 종자생명산업과 · 동물복지정책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[illegible]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⑪ _____
_____.

1. ~ 18. (현행과 같음)

<작 제>

<작 제>

<작 제>

<삭 제>

<삭 제>

및 제22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

24.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

25. (생략)

⑫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

13. ~ 19. (생략)

20. 소비자·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

21.·2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삭제>

19. (현행 제25호와 같음)

⑫ 식생활소비진흥과장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13. ~ 19. (현행과 같음)

20. 소비지·산지 -----
--

21.·22. (현행과 같음)

23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의 운영

24.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

25.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

26.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

27. 제24호에 따른 인증제도, 제25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도 및 제26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⑬ ~ (생 략)

제15조(식물검역부) ① ~ ④ (생 략)

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4. (생 략)

5. 삭 제

6.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

7. · 8. (생 략)

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9. (생 략)

<신 설>

⑦ (생 략)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(생 략)

28.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

⑬ ~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식물검역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 위험분석(소독분야는 제외한다.)

7. · 8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

⑦ (현행과 같음)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
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이
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
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
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
부터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
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2조
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
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식생활소
비급식진흥과장이 분장하고, 제
12조제11항제3호부터 제7호까
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
은 방역정책과장이 분장한다.

③ (생 략)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 농림
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
한 직급의 존속기간) 이 규칙
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
농업주사보 3명은 2021년 7월 1
1일까지 존속하며, 2021년 7월
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
정원은 별표 11의 농업서기보 3

② -----

----- 제12조
제15항제1호 -----
----- 식생활소
비진흥과장이 분장하고, 제12조
제15항제3호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 농림
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
한 직급의 존속기간) -----

----- 2023년 7월 11
일----- 2023년 7월 1
2일 -----

명으로 본다.

-----.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]

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(제3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 계	.		.		.		
			<u>1,133</u>		<u>1,149</u>	+16	
일반직 계			<u>1,133</u>		<u>1,149</u>	+16	
	.		.		.		
	.		.		.		
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			<u>15</u>		<u>23</u>	+8	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			<u>19</u>		<u>27</u>	+8	
	.		.		.		
	.		.		.		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9]

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(제3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 계	.		.		.		
			<u>1,133</u>		<u>1,149</u>	+16	
일반직 계			<u>1,133</u>		<u>1,149</u>	+16	
	.		.		.		
	.		.		.		
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			<u>15</u>		<u>23</u>	+8	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			<u>18</u>		<u>26</u>	+8	
	.		.		.		
	.		.		.		